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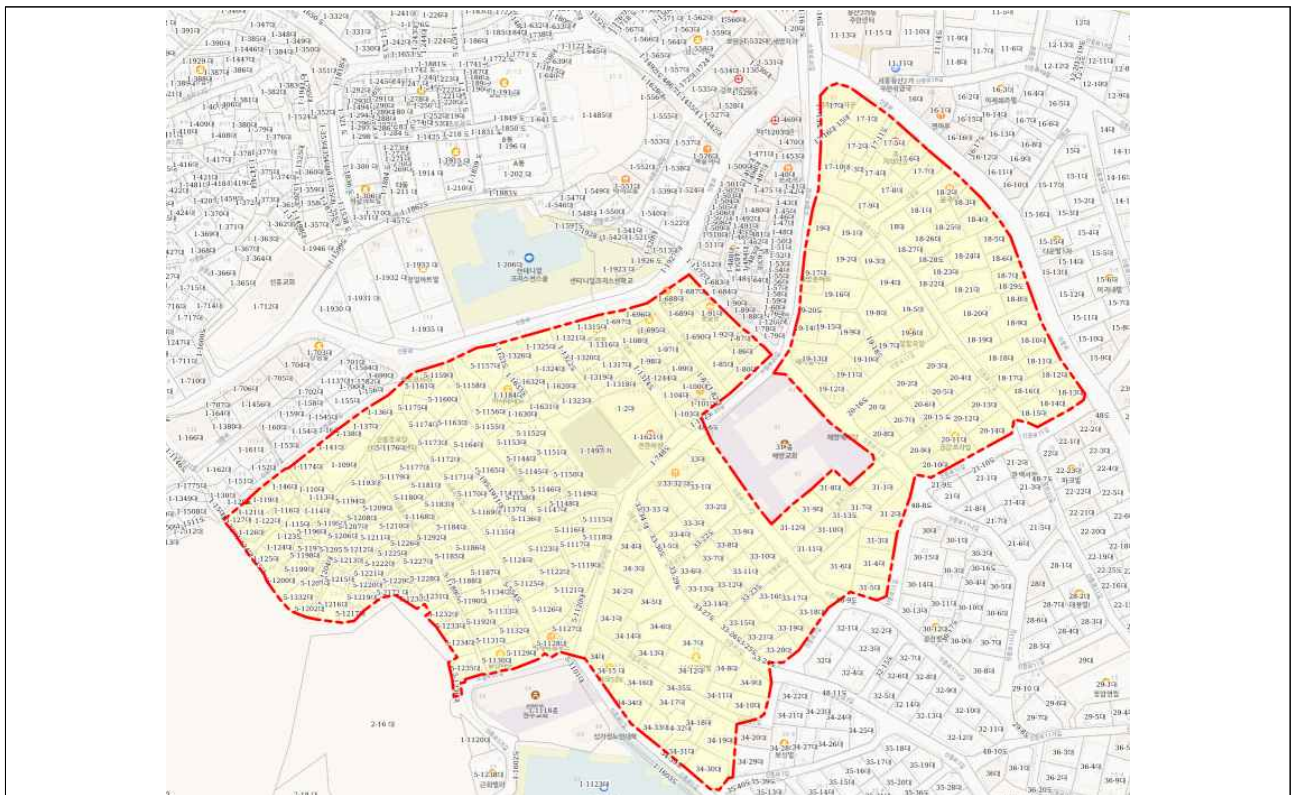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용산동2가 17-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남산3구역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(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동의 철회서, 반대동의 철회서)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한 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주민신청(주민→區)전까지 제출, 반대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, 동의서 제출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로 반대동의서도 제출하여야 반대 동의를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구 역 계 : 용산동2가 17-7번지 일대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
- 성 명 : 김 민 화
- 연락처 : 010-5587-8657

3. 찬성 및 반대 동의양식번호 및 부여일자

- 우리 구에서는 찬성 및 반대 동의양식번호를 **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**합니다. **동의양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**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용산동2가 17-7번지 일대 제 32 호
번호부여일자	2025. 7. 10.
확인(인)	재정비사업과장(인)

4. 공개 장소

- 용산구 홈페이지 > 재정비사업과 자료실
- 용산동2가 주민센터 게시판

5. 기타 안내사항

-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계 공개는 재개발 추진동향에 대한 사전안내 기능으로서 해당구역의 후보지 수시신청 전, 타 사업 공모 신청 또는 주민제안 등 타 사업 추진이 확인될 경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모집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.
- 해당 구역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 협의(위원회 자문 등)가 필요함
- 해당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사전검토 과정에서 **노후도 등 구역지정 기본 요건 미충족시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「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」의 후보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모집 신청이 불가함.**

< 후보지 신청 제외 대상 >

- 공공재개발, 모아타운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 선정된 구역
- 토지등소유자 25%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
- 전용주거지역
- 지분쪼개기,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발생 구역

- 동일(또는 일부 중복)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 원칙에 따라, 다수 추진주체가 동일(또는 일부 중복) 구역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할 경우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됨.
- ※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 다른 추진주체인 바, 동의시 번호확인 필수
- 후보지 공모 신청전 구역계를 추진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, 동의서 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아야 함.
- 붙임2, 3, 4 서식으로 작성된 반대동의서 및 동의철회서, 반대동의철회서만 인정함.
- 반대동의서와 찬성동의서 중복제출시 마지막 날짜 제출내용으로 간주 처리되며, 반대동의 철회시 찬성으로 무조건 간주 처리되는 것은 아님(찬성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).

- 붙임 1. 찬성동의서 서식 1부(추진주체에 별도 배부).
2. 반대동의서 서식 1부.
3. 동의철회서 서식 1부.
4. 반대동의철회서 서식 1부. 끝.